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04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2월 일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1. 제안이유

긴급현안질문 조항을 신설하여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긴급현안질문 조항 신설(안 제78조의2)

3. 검토의견

가. 입법 필요성

- 본 개정안은 긴급현안질문 조항을 신설하여, 시정(市政)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.
- 현재 「하남시의회 회의규칙」 제78조에 시정에 관한 질문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,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질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해 보임.
- 국회의 경우 1994년부터 긴급현안 질문제도를 도입하여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현안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바,
- 타 시군에서도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, 이를 통해 집행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확보하고 대시민

정보공개의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.
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.

나. 입법 적정성

- 긴급현안질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경우, 집행부의 준비 부담과 행정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발의요건(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)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, 남용의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임.
- 긴급현안질문 제도 도입은 시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,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
다. 법적 타당성

-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, 따라서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회의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입법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라. 결론

- 본 개정안은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현안이나 문제 발생 시,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질문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 그 필요성과 취지가 인정되고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

[참고자료] 긴급현안질문 관련 타 지자체 조례 현황

연 번	자치단체명	법 규 명	제·개정일
1	서울특별시 강동구	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	2023-12-27

2	경기도 수원시	수원시의회 기본 조례	2024-12-31
3	경기도 과천시	과천시의회 회의 규칙	2023-03-31
4	경기도 구리시	구리시의회 회의 규칙	2024-11-29
5	충청남도 아산시	아산시의회 회의 규칙	2025-03-05